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

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태평양 부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changwan.han@bkl.co.kr)

정부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협정 체결당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분쟁절차의 피청구국이면서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이고,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이나 투자분쟁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의 일면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협정은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체결되기 시작하였지만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다양한 비판과 의구심에 직면하면서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 증진과 보호에 따른 경제 발전이라는 투자협정의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그 운명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 투자협정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편협하게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강조하여 무조건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핵심용어 : 투자협정, 투자분쟁, 정부, 국가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투자협정의 당사자
1. 투자협정 체결의 당사자
2. 투자협정상 권리·의무의 결정 주체
3. 투자협정상 의무 부담 주체
4. 투자협정 해석의 주체
5. 투자협정 종료의 결정자

Ⅲ. 투자분쟁의 피청구국
1. 투자분쟁에서 방어자로서의 역할
2. 투자협정 해석자로서의 역할

Ⅳ.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
1. 자국 투자자의 투자분쟁 제기
2. 투자협정 해석자로서의 역할

Ⅴ. 국민에 대한 책임 부담

Ⅵ. 논의의 종합 – 마무리를 대신하여

Ⅰ. 들어가면서

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증진, 보호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협정(investment treaty)[1]을 체결한다. 그런데 투자협정은 다른 조약과 달리 투자유치국이 타방 당사국이 아닌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고는 투자협정에 있어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그 함의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애초 투자협정이 왜 체결되기 시작하였는지 그 배경을 안다면 투자협정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협정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이에 관하여 정부가 가지는 역할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강대국의 투자자가 자원이 많은 식민지나 약소국에 투자하거나 자원을 개발하고, 강대국들은 자국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길 때는 당시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여겨진 무력 사용 등을 포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통해 자국 투자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였다.[2] 그러나 20세기 초중반부터 자국 투자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무력사용 행사가 국제법상 금지되었고,[3]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남미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식민지배 시절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자원이나 시설 등을 국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자본수출국은 자국 투자자의 권리를 무력사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통제권을 강조하면서도, 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가 경제 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4]

자국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수출국과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영토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수입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5] 하자 이를 규율할 필요도 있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재량에 따라 행사하는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

1) 여기서 투자협정에는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하여 양자간·다자간 체결하는 협정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투자에 관한 장(investment chapter)을 포함한다.

2)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Eigh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852-853; David Collin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9-11 참조.

3) Shaw, *International Law*, 853-854.

4) Collin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11-14 참조.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가 2015년 2,154,820 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매년 1,500,000 백만 달러 가량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OECD (2023),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0c8cb50d-en.

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6]

이에 따라 독일과 파키스탄이 1959년 최초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1980년까지 모두 101개, 1990년까지 추가로 286개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특히 1975년경부터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기 시작하였다.[7]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2,584개의 투자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8]

이러한 투자협정의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투자협정의 당사자, 투자분쟁절차의 피청구국,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 및 국민에 대한 책임 부담의 순서로 살펴보고, 논의를 종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투자협정의 당사자

1. 투자협정 체결의 당사자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과 효력 발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할 것인지, 효력 발생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나 투자에 관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이러한 의무 부담 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사 타방 당사국과 투자협정의 문언을 성공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비준 여부는 당사국 정부나 의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UNCTAD는 투자협정 문언이 최종 타결된 시기와 효력의 발생 시기 간에 차이가 크다면 잠재적 투자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잃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9]

투자협정 문언의 최종 타결과 협정의 효력 발생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협정상 권리·의무는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의 투자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협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10] 그러나 설사 투자협정에 발효 전 분쟁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발효 전 분쟁에 대해서는 투

6) C. L. Lim, Jean Ho and Martins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5, 35–36; Campbell McLachlan, Laurence Shore, and Matthew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Substantive Principles*,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3–4; Peter Muchlinski, "Policy Issu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dited by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3–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6.

7) Lim, Ho and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59–61.

8) UNCTAD, *Trends in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and a Reform Toolbox for the Energy Transition*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23).

9) UNCTAD, *The Entry Into Forc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IA Monitor No. 3* (2006).

10) McLachlan, Shore, and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233.

자협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1] 이는 비교적 초기의 사건인 *Ukraine Generation* 사건[12] 뿐만 아니라 최근 판정이 선고된 *Lone Star* 사건의 중재판정부 역시 투자협정 발효 전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3]

2. 투자협정상 권리·의무의 결정 주체

정부는 투자협정으로 인해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투자유치국은 어떠한 내용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정부가 투자협정에 어떠한 내용의 조항을 두는지에 따라 투자자가 가지는 실체적·절차적 권리나 투자유치국의 의무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달라진다.

초기의 투자협정들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에 체결된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공정·공평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 우산조항 등 투자유치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자신의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14]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투자분쟁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패소한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재판정이 선고되면서 투자협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15] 국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강조하거나 의무의 범위를 한정(예컨대,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국제법상 최소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의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있다.[16]

구체적인 조항 뿐만 아니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알 수 있는 투자협정의 서문에서도 공적 목적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투자협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문은 투자의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증진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려를 위한 정당한 정부의 목적 달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서문의 언급은 투자유치국이 부담하는 의무나 투자협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결당사국이 서문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투자협정 서문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일반

11) McLachlan, Shore, and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234-235.
12) *Generation Ukraine, Inc. v. Ukraine*, ICSID Case No. ARB/00/9, Award, paras. 11.2-11.3.
13)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para. 321.
14) Lim, Ho and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60-61.
15) Lim, Ho and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72-73.
16) UNCTAD, *Trends in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and a Reform Toolbox for the Energy Transition*, 2.

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투자협정의 개별 조항이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17] 투자협정에서 정한 투자유치국의 의무, 특히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나 충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과 같은 기준은 추상적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서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서문을 자주 고려한다.[18] *CMS* 사건 중재판정부는 공정·공평대우 기준의 중요한 내용이 법적·경영적 환경의 안정성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투자협정 서문에서 투자에 관한 안정적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19] *SGS v Philippines* 사건 중재판정부는 투자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투자협정 해석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20] 따라서 협정당사국들이 합의한 구체적 조항 뿐만 아니라 서문의 문언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협정당사국의 권리·의무는 달라질 수 있다.

3. 투자협정상 의무 부담 주체

정부는 투자협정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와 같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정부는 투자협정의 발효 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는 당사자로서 의무의 부담 여부, 시기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이처럼 스스로 결정하여 동의한 바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특히 투자자와의 분쟁을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적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있다. 투자자에게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정책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투자분쟁절차 그 자체가 선 또는 악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국 정부가 투자협정에서 투자분쟁절차를 채택하지 않거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일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등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진 재량에 따라 그와 같은 정책

17) Collin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51-253.

18) 예컨대, *Romak* 사건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투자(investment)'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문이 중요하다고 설시하였다. *Romak S.A.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PCA Case No. 2007-07/AA280, Award, para. 206. "... [T]he Arbitral Tribunal needs to construe the term 'investments' in its context and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BIT. In this regard, the Arbitral Tribunal attaches importance to the BIT's preamble ..."

19)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para. 274. "The Treaty Preamble makes it clear, however, that one principal objective of the protection envisaged is tha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s desirable "to maintain a stable framework for investments and maximum effective use of economic resources." There can be no doubt, therefore, that a stable legal and business enviro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20)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2/6,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para. 116.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BIT supports an eff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X(2). The BIT is a treaty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According to the preamble it is intended "to create and maintain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ments by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It is legitimate to resolve uncertainties in its interpretation so as to favour the protection of covered investments."

권한을 행사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체결 행위는 그 자체로 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21] 스스로 결정한 주권의 행사로 인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였다면, 강박이나 사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권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투자협정 해석의 주체

국가는 투자협정의 체결 주체로서 투자협정상 의무의 존재와 내용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협정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투자협정 중에는 이러한 해석자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제22.2조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가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한-미 FTA에 따른 투자분쟁절차에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제11.22조 제3항).

해석의 기준을 투자협정에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미 FTA 제11.10조는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환경 조치와 관련하여 협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투자협정에 협정 해석에 관한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는 투자협정 해석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 나목은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협정 당사국들이 조약 해석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협정 해석에 있어 당연히 고려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협정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협상문서 또는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 등은 협정의 규정을 해석할 때 역시 고려될 수 있다.[22] 예컨대, *Mondev* 사건 중재판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 제1105조의 공정·공평대우가 관습국제법상 최소기준대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인 미국이 협정의 비준 당시 의회에 제출한 설명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23] *Churchill Mining* 사건 중재판정부는 "동의하여야 한다(shall assent)"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조항을 해석함에 있

21) Rudolf Dolzer, Ursular Kriebaum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i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9. "While the right to exclude and to regulate foreign investment is an expression of State sovereignty, the power to conclude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with other States can also be seen as flowing from the same concept."

22) McLachlan, Shore, and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81-82.

23)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Award, para. 111. "... Yet the United States itself provides an answer to this question, in contending that, when adopting provisions fo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NAFTA (as well as in other BITs), the intention was to incorporate 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ether or not explanations given by a signatory government to its own legislature in the course of ratification or implementation of a treaty can constitute part of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treaty for the purposes of its interpretation,41 they can certainly shed light on the purposes and approaches taken to the treaty, and thus can evidence *opinio juris*."

어 협정당사국 간 주고받은 협정문 초안들을 검토한 후 "동의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동의한다(hereby consents)"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인정하였다.[24]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조약을 해석한다.[25]

5. 투자협정 종료의 결정자

정부는 투자협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투자협정의 당사국들이 동의하여 투자협정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협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투자협정에 대해 불만이 많아지면서 일부 국가는 협정을 종결시키기거나 ICSID 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26]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54개의 협정이 당사국들의 동의로 종료되고, 1개는 일방적으로, 3개는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등 모두 58개 협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27] 다만, 상당수 투자협정은 투자협정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투자협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협정상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8]

III. 투자분쟁의 피청구국

1. 투자분쟁에서 방어자로서의 역할

투자협정에 투자분쟁절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분쟁절차가 개시되면, 투자유치국은 해당 중재에서 피청구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청구국 중에서는 투자분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무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들은 설사 피청구국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용 협정이나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왔다. 물론 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한다.[29] 예컨대, *LETCO* 사건에서 피청구국 라이베리아는 투자분쟁절차가 개시된 이후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리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재판정부는 그 과정에서 피청구국에 관련 정보가 모두 적시에

24) *Churchill Mining PLC and Planet Mining Pty Ltd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Case No. ARB /12/14 and 12/4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30-231.

25)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96,* p. 803. para. 29.

26) Dolzer, Kriebaum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17; Lim, Ho and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73-75.

27) UNCTAD, *Trends in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and a Reform Toolbox for the Energy Transition,* 2.

28) 예컨대,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제12조 제3항은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라고 하여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협정 종료 전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20년간 협정상 보호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9) Dolzer, Kriebaum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411.

제공되록 하였고,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 경우에도 모든 증명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면서,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0]

2. 투자협정 해석자로서의 역할

투자분쟁절차에서 피청구국의 주장은 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피청구국이 어느 절차에서 특정한 의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는 해당 투자협정에 관한 그 국가의 입장 또는 의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피청구국은 간접적으로 투자협정 해석에 관여하기도 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청구국은 다양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흔한데, 청구인과 공방을 주고받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받으면서 투자협정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같은 내용의 판단이 반복되면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선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31] 심지어 기존의 일관된 판단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중재판정부들도 있다.[32] 중재판정부는 모든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주장한 쟁점을 판단한다는 점[33]에서 피청구국의 항변은 간접적으로 투자협정 해석의 발전에 기여한다.

IV.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

1. 자국 투자자의 투자분쟁 제기

정부는 주로 투자분쟁절차의 피청구국으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즉 투자중재 청구인)의 본국 정부이기도 하다. 이 경우 정부는 자신의 국적자(개인, 법인)가 제기하는(할) 투자분쟁절차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된다. 일부 국가는 단순히 자국 투자자가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분쟁절차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공하기도 한다.[34] 예컨대, *Lone Star*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본국인 벨기에의 외

30) *Liberian Eastern Timber Corporation v. Republic of Liberia*, ICSID Case No. ARB/83/2, Award, paras. 7-28.

31) McLachlan, Shore, and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89-90; Dolzer, Kriebaum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46-47.

32) *Saipem S.p.A. v.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05/07,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Recommendat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67. "It believes that, subject to compelling contrary grounds, it has a duty to adopt solutions established in a series of consistent cases. It also believes that, subject to the specifics of a given treaty and of the circumstances of the actual case, it has a duty to seek to contribut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investment law and thereby to mee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of States and investors towards certainty of the rule of law."; *Bosh International, Inc and B&P Ltd Foreign Investments Enterpris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8/11, Award, para. 211;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Case No. ARB/09/8, Award, para. 83; *Churchill Mining PLC and Planet Mining Pty Ltd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Case No. ARB /12/14 and 12/40, Award, para. 253.

33) McLachlan, Shore, and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90.

34)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의견 제시는 신중해야 한다.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제출한 의견이 추후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분쟁절차에서 불리하게 원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와 조세당국이 작성한 서한이 청구인들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였다.[35]

또한, 투자협정의 해석에 따라 국영기업, 공기업 또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투자자로서 외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면, 사실상 국가가 투자분쟁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이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 등이 사적 투자자(private investors)와 마찬가지로 타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ICSID 협약 채택을 위한 협상 당시 세계은행의 General Counsel이면서 ICSID 협약의 설계자인 Aron Broches가 제안한 소위 Broches test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는 국영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과 마찬가지의 거래나 투자를 한다면 투자분쟁 청구인으로서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36]

ICSID 협정은 국영기업 등이 청구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실제 여러 중재판정부는 Broches test를 적용하여 국영기업 등인 청구인의 청구인적격(standing)을 인정하기도 하였다.[37] 예컨대, 체코 정부가 65%의 지분을 보유한 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S.(CSOB)는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였고, 슬로바키아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관할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설사 체코 정부가 CSOB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CSOB의 거래는 민간은행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상업적이고 정부 기능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을 인정하였다.[38] 그렇다면 사안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 기능을 행사가 아니라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래 및 투자하였다면 국영기업, 공기업 또는 국부펀드라고 하더라도 투자분쟁의 청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39]

2. 투자협정 해석자로서의 역할

비분쟁당사국(청구인의 본국)은 적용되는 투자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투자협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분쟁당사국은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컨대, 한-미 FTA 제11.20조 제4항 제1문은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 FTA에 근

35) 이 서한들은 뒤에서 보는 비분쟁당사국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para. 65.

36) "There would appear to be no reason why a state-owned enterprise, if it elected to assimilate itself to a private enterprise rather than a government agency, should not be permitted to make use of the machinery of the Center, if the government party to the dispute agreed."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cuments Concerning the Origin and the Formulation of the Convention, Note by the General Counsel transmitted to the Executive Directors dated 19 January 1962, para. 30.

37) Dini Sejko, "Sovereign Investors as ICSID Claimants: Lessons from the Drafting Documents and the Case Law,"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6 (2023): 853-903.

38) *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S. v. The Slovak Republic*, ICSID Case No. ARB/97/4, Award, paras. 15-27.

39) *Dolzer, Kriebaum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356 참조.

거하여 제기된 투자분쟁절차에서 여러 차례 비분쟁당사국 의견을 제출하였다.[40] 중재판정부는 이렇게 제출된 비분쟁당사국 의견을 참조하기도 한다.[41] 심지어 중재판정부 중에는 비분쟁당사국에 관련 투자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한 후 그 답변을 참조한 예도 있다.[42]

V. 국민에 대한 책임 부담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는 투자협정의 체결과 종료, 투자분쟁절차에 피청구국으로서의 대응, 자국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분쟁절차에의 관여 등 모든 국면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서 국민은 개개 시민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각종 단체를 포함한다. 국가는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투자협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는 행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자의적으로 대우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보호의무로 인하여 환경 보호 등 국가의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43]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체결되는 투자협정에서는 안보 유지나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해석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미 FTA 제11.10조는 환경 조치에 관한 협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23.2조는 필수적 안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11-나 제3조 나호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양자간 투자협정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가장 최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는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보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치, 고갈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협정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자국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투자분쟁을 제기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외국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분쟁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40) *Jin Hae Seo v. Republic of Korea*, HKIAC Case No. 18117,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 June 2019;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February 2020; *Mason Capital, L.P and Mason Management LLC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5, Submiss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February 2020.

41) 예컨대, 한-미 FTA가 문제된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Award, paras. 435-437, 479, 560-564, 720-723.

42) *Aguas del Tunari, S.A. v. Republic of Bolivia*, ICSID Case No. ARB/02/3, Decision on Respondent's Objections to Jurisdiction, para. 262. "... the response from the Netherlands provides no additional information of the type suggested by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s being possibly relevant and upon which a general interpretative position might be based."

43) Kathryn Gordon, Joachim Pohl, "Environmental Concern in International Investments Agreements: A Survey,"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OECD Publishing, 2011). http:// dx.doi.org/10.1787/5kg9mq7scrjh-en.

일정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나아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공적 자금이 지출될 수 있다. 투자분쟁절차에서 국가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시행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에는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인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고,[44] 최근 선고된 여러 판정에서도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실행하는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비례성과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진정한(bona fide) 정책권한에 따른 조치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5] 또한, 투자자가 분쟁의 발생을 예견하고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적격(admissibility)이 없다고 보아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행사하지 않기도 한다.[46]

이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하는 책임 이행 또는 정당한 정책권한 보장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최근 체결되는 투자협정, 최근 선고되는 중재판정, 최근 학계의 연구 등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투자협정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폭발적인 투자분쟁사건 증가와 이로 인하여 각국이 부담하는 막대한 부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 공공 이익 증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I. 논의의 종합 – 마무리를 대신하여

이상 살펴본 것처럼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투자협정 체결 여부, 의

44) Collin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174–175; Crina Baltag, "Investment Arbitration and Police Powers: Emerging Issues," *European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Review Online*, vol. 5(1) (2020): 392–399; Catharine Titi, "Police Powers Doctrin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edited by Filippo Fontanelli, Andrea Gattini and Atiila Tanzi, 323–343 (Brill, 2018).

45) 예컨대,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Award, paras. 287–307. 참조. "305. As indicated by earlier investment treaty decisions, in order for a State's action in exercise of regulatory powers not to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 the action has to comply with certain conditions. Among those most commonly mentioned are that the action must be taken bona fid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welfare, must be non-discriminatory and proportionate. In the Tribunal's view, the SPR and the 80/80 Regulation satisfy these conditions."

46) *Philip Morris Asia Limited v.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UNCITRAL, PCA Case No. 2012-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para. 585. "[T]he Tribunal concludes that the commencement of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 (or abuse of process) when an investor has changed its corporate structure to gain the protection of an investment treaty at a point in time where a dispute was foreseeable. A dispute is foreseeable when there is a reasonable prospect that a measure that may give rise to a treaty claim will materialise."

무의 내용, 종료 여부를 결정하며, 투자협정이 발효하면 협정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또한, 투자분쟁의 피청구국으로서 투자자의 청구를 방어하지만, 반대로 자국의 투자자가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부는 공적 목적을 수행하고, 개인, 기업 및 시민사회 등 국민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투자협정의 체결과 투자분쟁절차는 이러한 정부의 공적 역할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을 일면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투자분쟁절차에서 어느 국가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협정이나 투자분쟁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다. 오히려 정부의 행동 기준을 전체적으로 높여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협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투자가 다른 경제적 활동 또는 무역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투자는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에 있다. 투자자는 자원의 투입을 통해 수익의 창출을 도모하고, 투자유치국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투자협정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투자를 증진 및 보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또한,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협정의 수는 20세기 후반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1세기에 들어 이에 대한 회의가 표출되고 다양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 보호, 보건, 안보이익 등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투자협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투자협정의 발생, 증가 및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현재 세계무역기구, 특히 분쟁해결기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투자협정의 운명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47] 투자협정의 체결 이유, 즉 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 그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투자협정과 관련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어느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편협하게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47) 유사한 취지로는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609.

참고문헌

〈도서〉

Collins, *Davi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rawford, James.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Dolzer, Rudolf, Kriebaum Ursular and Schreuer, Christop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i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Lim, C. L., Ho, Jean, and Paparinskis, Marti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McLachlan, Campbell, Shore, Laurence and Weiniger, Matthew.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Substantive Principles*,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Shaw, Malcolm N. *International Law*, Eigh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UNCTAD. *Trends in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and a Reform Toolbox for the Energy Transition*.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23.

〈논문〉

Baltag, Crina. "Investment Arbitration and Police Powers: Emerging Issues," *European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Review Online*, vol. 5(1) (2020): 392-399.

Gordon, Kathryn, Pohl, Joachim. "Environmental Concern in International Investments Agreements: A Survey,"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OECD Publishing, 2011. http://dx.doi.org/10.1787/5kg9mq7scrjh-en.

Muchlinski, Peter. "Policy Issu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dited by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3-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OECD.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2*.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0c8cb50d-en. 2023.

Sejko, Dini. "Sovereign Investors as ICSID Claimants: Lessons from the Drafting Documents and the Case Law,"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56 (2023): 853-903.

Titi, Catharine. "Police Powers Doctrin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edited by Filippo Fontanelli, Andrea Gattini and Atiila Tanzi. 323-343. Brill, 2018.

UNCTAD. *The Entry Into Forc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IA Monitor No. 3,* 2006.

〈판정례 및 법률문서〉

Bosh International, Inc and B&P Ltd Foreign Investments Enterpris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8/11, Award.

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S. v. The Slovak Republic, ICSID Case No. ARB/97/4, Award.

Churchill Mining PLC and Planet Mining Pty Ltd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Case No. ARB /12/14 and 12/40, Decision on Jurisdiction.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Award.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neration Ukraine, Inc. v. Ukraine, ICSID Case No. ARB/00/9, Award.

Jin Hae Seo v. Republic of Korea, HKIAC Case No. 18117,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Case No. ARB/09/8, Award.

Liberian Eastern Timber Corporation v. Republic of Liberia, ICSID Case No. ARB/83/2, Award.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Mason Capital, L.P and Mason Management LLC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5, Submiss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Award.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96.

Philip Morris Asia Limited v.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UNCITRAL, PCA Case No. 2012-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Philip Morris Brands Sá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Award.

Romak S.A.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PCA Case No. 2007-07/AA280, Award.

Saipem S.p.A. v.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05/07,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Recommendation on Provisional Measures.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2/6,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cuments Concerning the Origin and the Formulation of the Convention, Note by the General Counsel transmitted to the Executive Directors dated 19 January 1962.

〈협정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06. 12. 12.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19. 4. 19. 서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 6. 30. 서명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 5. 23. 채택

Abstract

Exploring the Government's Fourfold Rol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Changwan HAN
Partner at Bae, Kim & Lee LLC
(changwan.han@bkl.co.kr)

Governments have a variety of roles in relation to investment treaties. They are not only parties to investment treaties, but also respondent states in investment dispute proceedings, home states of investors who initiate investment disputes, and subjects of responsibility to their citizen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avoid emphasizing only one-sided roles of states or governments in relation to investment treaties or investment dispute proceedings. Investment treaties began to be concluded actively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ir contents have been changing as they have faced various criticisms and doubts in the early 21st century. In light of this,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ate of investment treaties, let alone achieving the purpose of investment treaties, which i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investment treatie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the various roles of governments and adjust them appropriately. It is not desirable to unconditionally criticize or praise investment treaties and investment disputes by emphasizing one role in a narrow-minded way.

Keywords : Investment Treaty, Investment Dispute, Government, State